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12 선고 2023나2196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12 선고 2023나2196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18 선고 2020가단527413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서평

담당변호사 김상호, 신원진

피고, 피항소인 1.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

담당변호사 윤태일, 홍순기, 홍경선, 유승완

2. C

변론종결 2024. 5. 1.

판결선고 2024. 6. 12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4. 18. 선고 2020가단527413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. 5. 27. 접수 제279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는 원고에게 2014. 10.

12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 판결 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원고는, 피고 C가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,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사이의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,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되었다고 할 것이다.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

정당하므로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변성환, 판사 양형권, 판사 황순교